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9 - 153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(2006.10.19.)호로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63호(2008.07.3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36호(2010-04.1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233호(2015.08.06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27호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되었으며,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 2010-35호(2010.04.30.)로 사업시행인가 되고,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1-52호(2011.07.04.)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5-84호(2015.05.21.)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7-82호(2017.06.01.)호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되었으며,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8-128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74조 제1항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하고, 같은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2019년 09월 26일

성 북 구 청 장

관 리 처 분 계 획 (변 경) 인 가 고 시

1. 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사업의 명칭 :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3.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42-1번지 일대(13,449.00㎡)
4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:
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(조합장 고영철),
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48 삼부아파트 105-201
5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8년 10월 11일
6.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의 요지
 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: 변경없음
 - 나. 토지이용계획 : 변경없음
 - 다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공급 대상	주택규모별(전용면적기준) 공급세대수							상가 면적 (㎡)	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(㎡)
	계	39㎡	42㎡	59A㎡	59B㎡	59C㎡	84㎡		
계	395	32	32	62	121	89	59	23,153.85	-
조합원	92			16	10	31	35	23,153.85	-
보류 시설	1					1			-
일반 분양	219			38	104	57	20		-
임대	83	32	32	8	7		4	-	-

라. 신설 또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: 변경없음

마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: 이주 완료 후 철거 예정

바. 기타 변경 사항

- 수입 및 정비사업비 추산액의 변경 및 「도시정비법시행령」제61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

7.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성북구청 주거정비과
(☎ 02-2241-2855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